민생위기 극복
대안 마련
연속 토론회

제1차

민생물가 대책 및 소득보전 방안

2022.7.18. 월 13:30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민생위기 극복 대안 마련 연속 토론회

제1차: 민생물가 대책 및 소득보전 방안

개 요

목 적

-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물가, 부채, 소득충격 등 현재 크게 대두되고 있는 민생현안에 대한 진단, 정부정책 평가 등을 통한 선제적 대안 마련

주요 내용

- 주 제 : **민생물가 대책 및 소득보전 방안**
- 일 시 : **2022년 7월 18일(월) 오후 13시 30분**
- 장 소 :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식 순

구 분	시 간	패널 및 주요내용
인사말	13:30~13:35	• **노 웅 래** 민주연구원 원장
축사	13:35~13:45	• **우 상 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김 태 년**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좌 장]		• **김 병 욱** 국회의원
발 제	13:45~14:45 (각 20분)	• **김 용 진** 서강대학교 교수 • **전 병 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송 두 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토 론	14:45~15:25 (각 10분)	• **이 용 우** 국회의원 • **박 기 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임 영 주**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실장 • **이 성 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5:25~15:30	공 동

인사말

노웅래 민주연구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입니다.

우리 민주연구원에서 “민생위기 극복 대안 마련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1차 토론회 주제는 “민생물가 대책 및 소득보전 방안”입니다.

지난 6월 물가상승률이 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급등했던 5.9%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미 경고등은 켜진 상태이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던 9%대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미국은 이미 9.1%까지 뚫렸습니다.

물가상승의 피해와 불편함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입니다. 급등한 점심값에 부담을 느낀 많은 직장인이 편의점에서 점심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기름값 때문에 대중교통에 사람이 몰리다 보니 요즘 출퇴근길이 초만원입니다. 게다가 곧 전기요금, 가스요금 모두 오를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구조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기재부장관은 높은 임금이 원인으로 작용하니 기업들이 나서서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위기에 처한 민생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국민들의 근원적인 주머니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연동제를 포함한 소득세 개편,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소상공인 대출연장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띤 논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명목세율이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어,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자연스럽게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 여러분의 심도 깊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귀한 자리 좌장을 맡아주신 김병욱 의원님, 발제를 맡아주신 김용진 교수님, 전병욱 교수님, 송두한 부원장님. 토론을 맡아주신 이용우 의원님, 박기백 교수님, 임영주 실장님, 이성원 사무총장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신 객석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22년 7월 18일

민주연구원 원장 노웅래

축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입니다.

민주연구원이 주최하는 〈민생위기 극복 대안 마련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인 〈민생물가 대책 및 소득보전 방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행사 준비에 노고가 크셨던 노웅래 민주연구원장님과 김병욱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로 인해 민생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물가상승률이 6%를 넘어섰고,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20원선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사상 첫 '빅스텝' 단행으로 1,9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 역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악조건들이 겹치면서 국민의 고통도 커지는 중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기조입니다. 민생 고통 경감을 위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세, 경제 형벌 경감, 무분별한 규제 완화 같은 엉뚱한 처방전만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일자리 예산 삭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근로자 임금 옥죄기, 지역화폐 예산 전면 삭감 등의 반서민적 정책까지 연달아 발표 중입니다. 심지어 국정 동력 대부분을 경제와 민생 위기 극복이 아닌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생위기의 핵심은 결국, 물가와 소득입니다. 물가 상승이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고, 이것이 다시 소비를 줄여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가 대단히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악화일로 중인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실직적인 정책대안이 모색되길 기대하며, 거듭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우 상 호

축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반갑습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년입니다.

오늘 〈민생물가 대책 및 소득보전 방안〉을 주제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1차 연속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 뜻깊은 토론회를 열어주신 노웅래 민주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초대형복합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과 끝나지 않은 팬데믹 위기에 더해, 국제 정세도 한 치 앞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환율과 금리가 급등하면서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고, 유례없는 물가 상승률로 취약계층은 물론 직장인들까지 점심값을 걱정하는 때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위기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IMF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온 국민의 저력을 압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더욱 고통받고,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것 또한 압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정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정부여당은 위기를 타개할 아젠다를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을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어떤 방향을 향해 있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경제,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위기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정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감, 긴장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경제 분야의 내로라하는 전문가 분들이 한 데 모였습니다. 현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입니다. 저 역시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늘 나눠주신 고견이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고, 바쁘실텐데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년

Contents

민생위기 극복 대안 마련 연속 토론회 제1차: 민생물가 대책 및 소득보전 방안

인사말

노 웅 래 민주연구원 원장 ---------- 1

축사

우 상 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3

김 태 년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 5

발제 1

물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9

김 용 진 서강대학교 교수

발제 2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23

전 병 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3

비상경제 하의 소득보전 대책 ---------- 33

송 두 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토론 1

민생물가 대책 및 소득보전 방안 ---------- 45

이 용 우 국회의원

Contents

민생위기 극복 대안 마련 연속 토론회 제1차: 민생물가 대책 및 소득보전 방안

토론 2

민생물가 대책 및 소득보전 방안 ---------- 49

박 기 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3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 ---------- 53

임 영 주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실장

토론 4

경제위기 소상공인 소득 보전 대책 ---------- 57

이 성 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발제 1

물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 용 진 서강대학교 교수

물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용진 교수
서강대학교

물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제4차 산업혁명의 의의와 특징
2.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변혁
3. 디지털변혁과 자동차산업
4. 디지털변혁전략
5. 결론 및 시사점

물가상승 현황

직장인도 취약계층도...요즘, 밥 먹기가 두렵다

물가 상승: 글로벌 경기 우려에 아시아 증시 하락

치솟는 물가가 일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 된 이유

치킨라이스: 싱가포르 국민 음식이 위협받는 이유

(출처: BBC코리아)

물가상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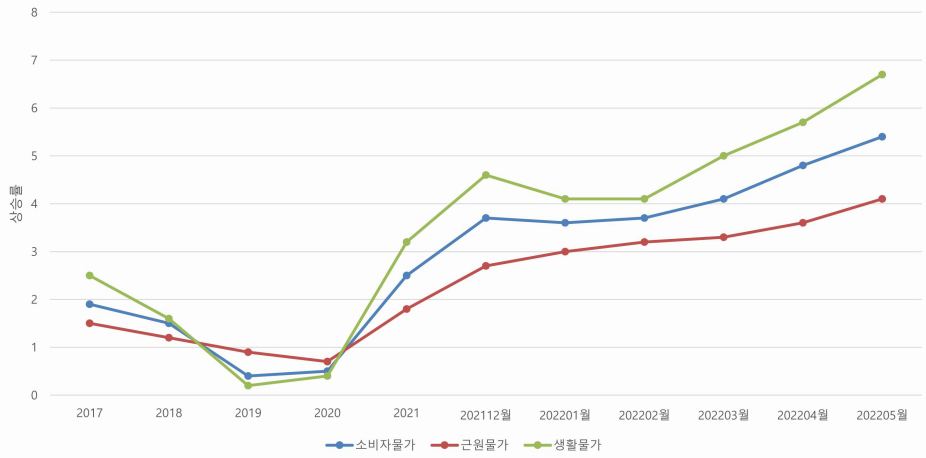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2015년을 100으로 460개 조사항목을 가중평균하여 매월 지수를 산출 발표
생활물가지수 :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
근원물가지수 : 전체 460개 품목 중에서 농산물과 석유류 등 53개 품목을 제거하고 나머지 407개 품목을 별도로 집계한 지

물가상승 현황

소비자물가 구성 요소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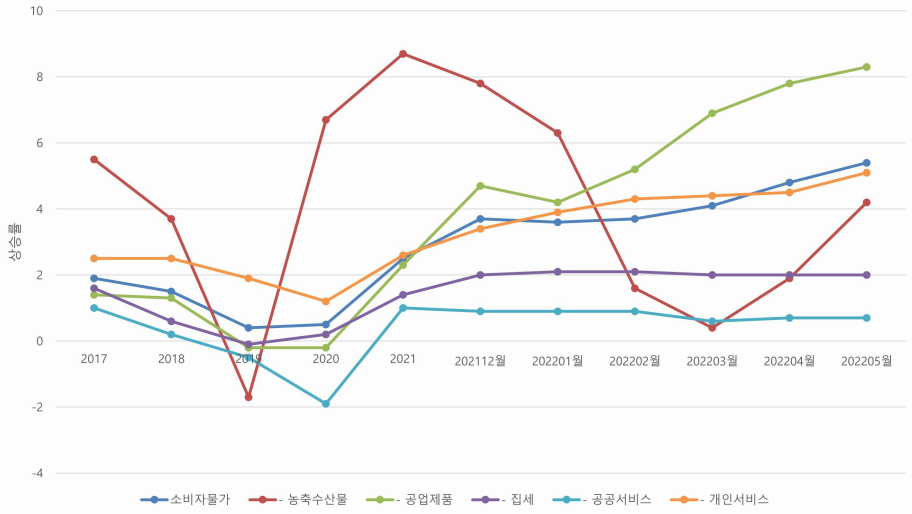

물가상승 현황

소비자물가 상승 국가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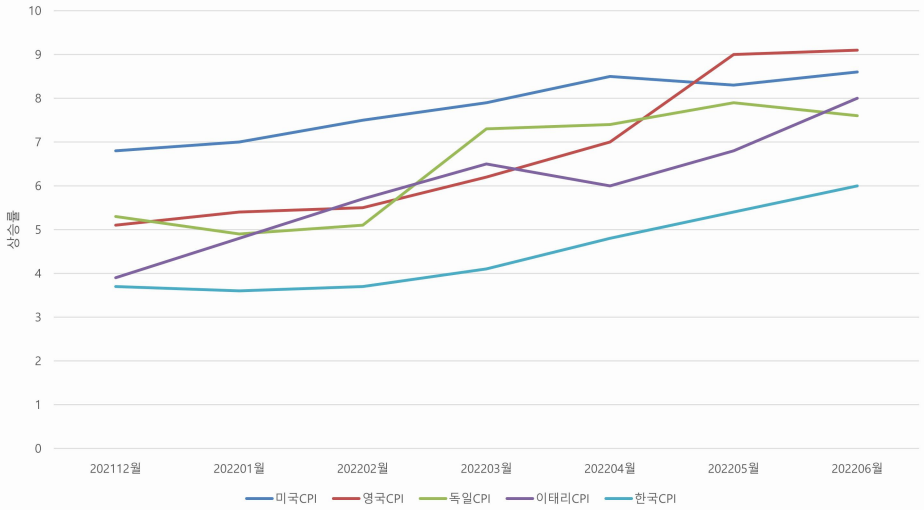

물가상승 요인

국제유가 상승

- 러시아는 세계 3대 원유 생산국- 세계 1위 석유 수출국
-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90% 축소 의결
- 사우디아라비아의 7월 원유 판매 가격 인상 결정
- 최대 석유 소비 시장인 중국의 봉쇄조치 해제로 인한 수요 폭증
- 여름 휴가철 휘발유 수요 증가

곡물가격 급등(애그플레이션 agriculture + Inflation)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곡물 공급 차질과 작황 부진
- 일부 국가의 식량 수출 제한 조치
- 쌀을 제외한 식량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가공식품 및 외식물가 상승

물가상승 요인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 극심한 가뭄과 이상고온으로 채소류 작황 부진
- 7월과 8월 무더위 지속 예상

통화량 증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통화 발행 및 통화 공급
- 한국의 통화량은 2010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코로나19 보복소비 증가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보복 소비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 BC카드의 '거리두기 단계별 식당·주점업 매출' 자료
  -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 4월 18일 - 30일까지 식당 매출은 거리두기 해제 전 3월 1일 - 20일과 비교했을 때 27% 증가. 주점 매출은 같은 기간 47% 증가

물가상승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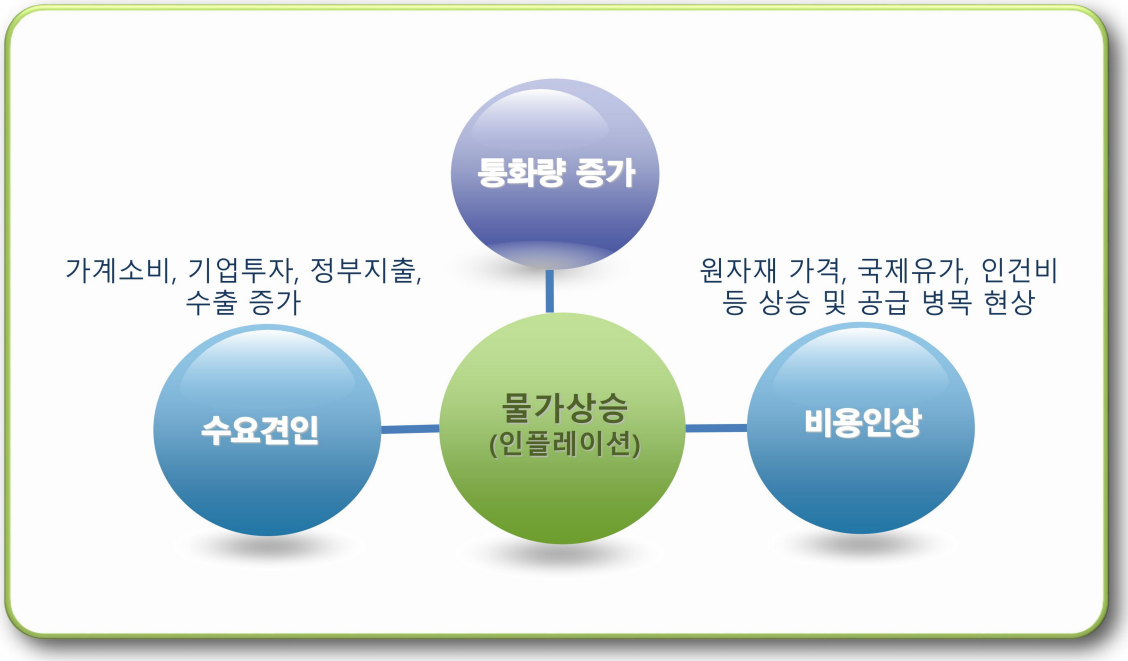

물가상승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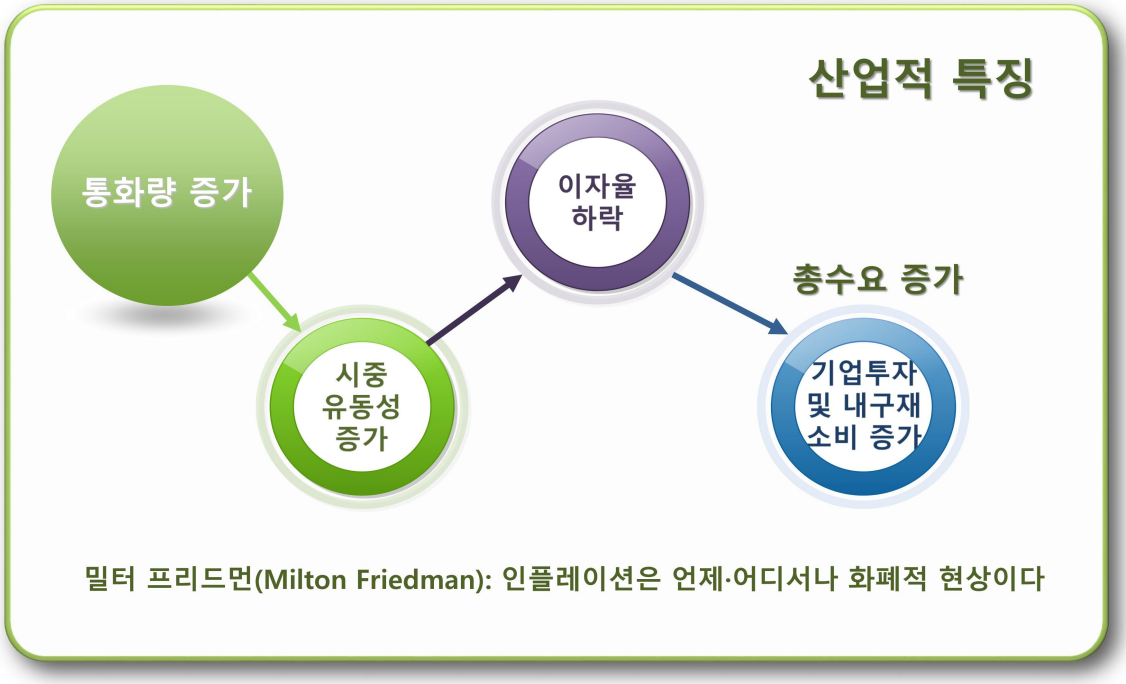

물가상승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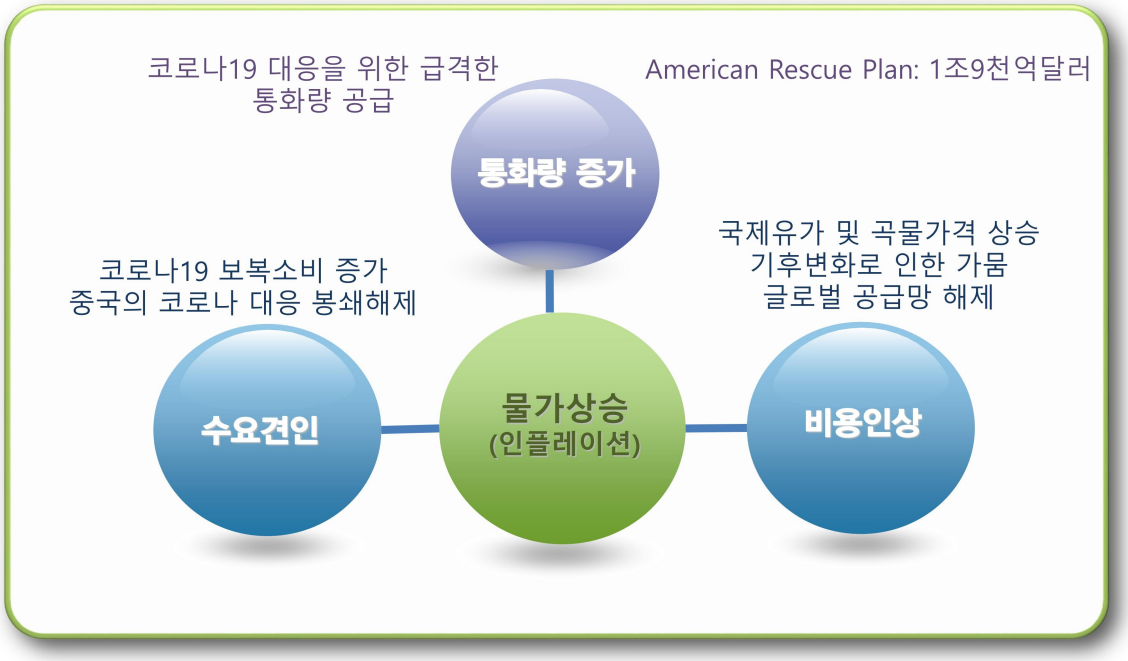

물가상승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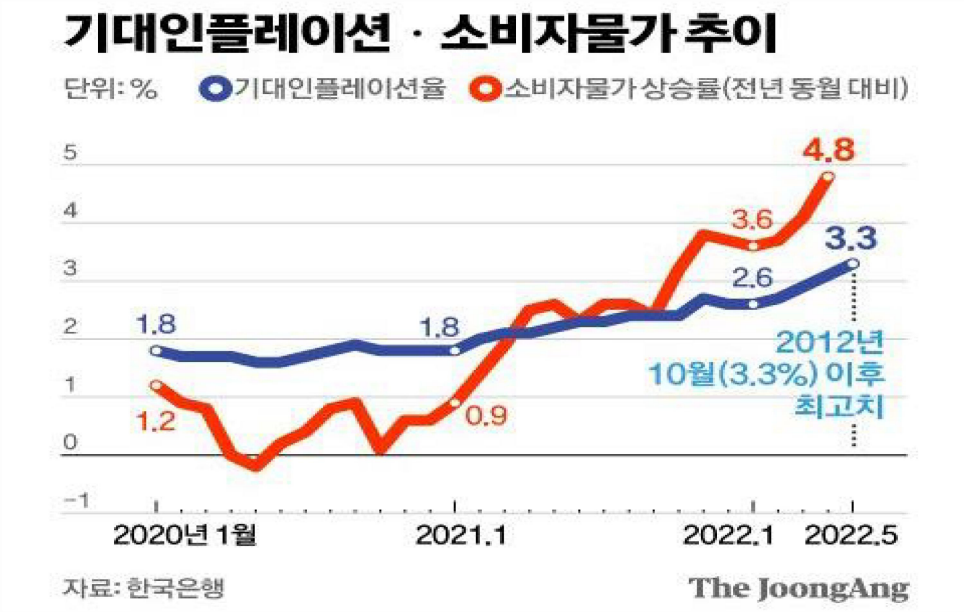

물가상승 영향

개요

- 빈부격차 심화
- 비생산적 투자(예:부동산 투기 등) 확대
- 부의 재분배 악화
- 기업의 투자 위축
- 국제 수지 악화

물가상승 영향

■ **빈부격차 심화**

- 실물자산 소유자의 실질 소득 증가
- 봉급생활자와 금융 자산 소유자의 실질 소득 감소
- 연금소득자 실질 소득 감소

■ **비생산적 투자 확대**

- 화폐 가치 하락 → 저축 가치 감소 → 실물자산(부동산) 투자 증가
- 가격 상승 → 생필품 사재기로 인한 물자부족 현상 발생

물가상승 영향

■ **부의 재분배 악화**

- 채권자(가계)는 불리하고 채무자(기업)는 유리
- 국가(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는 유리하고 가계는 불리

■ **기업투자 위축**

- 화폐 가치 하락 → 저축 감소 → 기업투자 감소
- 생산비용 증가 → 가격 상승 → 소비감소 감소→ 기업투자 감소

■ **국제수지 악화**

- 제품가격 상승→ 수입수요 증가 → 국제수지 악화
- 수출 가격 상승→ 해외수요 감소→ 수출 감소→ 국제수지 악화

물가상승 영향

미국의 임금과 인플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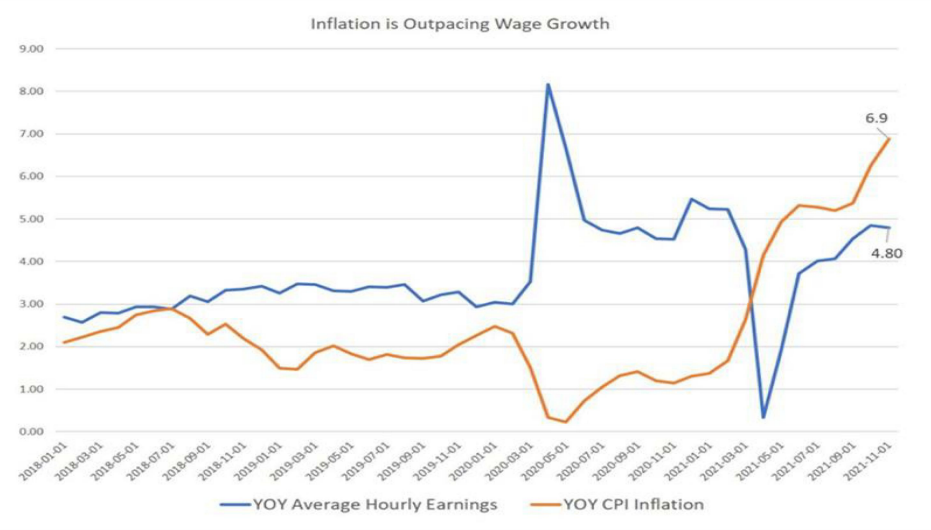

물가상승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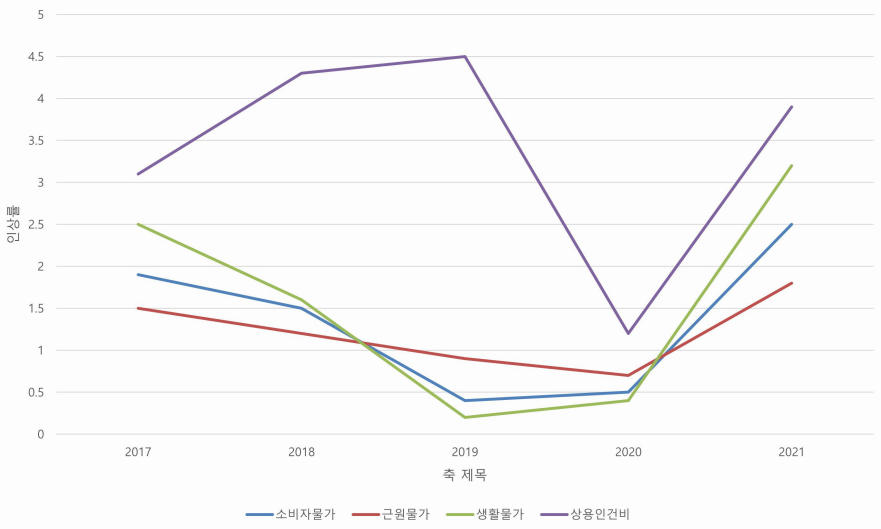

물가상승 대책

개요

- 정부 : 총수요 억제(통화량 및 정부 지출 축소), 공공 요금의 인상 억제
- 기업 : 경영 혁신과 기술 개발
- 노동자 : 생산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임금 인상 요구
- 소비자 :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 지향

물가상승 대책

폴 크루그먼
2~3% 물가 상승만 정상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어느 순간 굳어진 시장의 이상한 믿음일 뿐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하면 고통이 어마어마하다.
고물가 비용을 감당하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빈민 구제 등으로 사회적 효용을 얻는 게 낫다.

힙스(Hibbs)의 당파성 모형(Partisan model)에 대한 논문 (1977)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저소득계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높은 인플레이션의 경제 상태를 선호

고소득계층은 높은 실업률과 낮은 물가의 경제 상태를 선호

물가상승 대책

정부 역할

■ 통화량 및 정부 지출 축소를 통한 총수요 억제

- 재정정책: 재정지출의 축소, 세금의 조정, 바우처 지급, 지역화폐정책
- 통화정책:

① 금리경로: 공개시장운영(통화량 축소)→ 단기금리 인상 →장기금리 상승

② 자산가격경로: 금리인상→주식/부동산 수요감소→ 부의 감소 → 소비감소

③ 환율경로: 금리인상→ 원화가격상승→ 수출감소 및 수입증가

④ 신용경로: 통화량 감소 → 대출감소 → 투자감소

■ 공공 요금의 인상 억제(전기료, 가스료 기인상으로 사용 곤란)

■ 자산 가격 붕괴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

- DSR 관리 강화, 지급준비율 인상, RBC 관리 강화

물가상승 대책

가계부채 대책

- DSR 관리 강화
- 전환대출을 위한 **서민금융 보증 지원 강화**
- **개인/ 기업회생 제도의 실질화**
  - 파산선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자격제한의 완화
  - 법원의 개인파산절차 엄격심리방식, 전면적 파산관재인 선임제도 재검토

실질소득 감소 완화 대책

- **에너지/교통 바우처 등**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 **근로소득에 대한 적극적 감세**
-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 운용 확대**

물가상승 대책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

- 소상공인 대출 연장
- 소상공인 전환대출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 강화**
- 소상공인 지원 실**질화**
  - 소상공인 경비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한 소득세 감세 효과
  -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3개월 임차료 지원 등)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A

연락처
E-Mail: yongjkim@sogang.ac.kr
Tel: 02-705-8858
HP: 010-9345-8686

발제 2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전 병 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2022.7.18.

발표자: 전병욱(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체계의 문제점

○ 2008년 이후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단지 고소득층의 과세표준구간 변경 및 세율 인상만을 반영하는 과세구조를 유지하는 체계적인 문제점
-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전체 소득계층에서 과세표준구간과 적용세율이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어 체증적 과세구조가 고착되는 문제점
- 실질소득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물가상승에 의한 명목소득의 증가로 인해 과세표준구간이 상위구간으로 이동해서(Bracket Creep) 한계세율이 증가할 수 있고, 동일한 과세표준구간을 유지하더라도 평균세율이 증가해서 납세자의 실질적인 담세능력에 비해 조세부담율이 과중하게 높아지는 문제점("과세표준구간 고착화의 문제점")

○ 근로소득자의 과도한 면세자 비율로 인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 2014년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연말정산 후속 보완대책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의 급증했고, 2015년 이후에는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동 비율이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도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

○ 면세자 비율의 증가로 인해 근로소득세의 과세기반이 크게 축소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과세표준구간 확대 및 최고세율 인상)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근로소득세의 집중도가 심화되어서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점
- 높은 면세자 비율은 소득세의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는 과세표준구간·세율구조의 단순화라는 소득세 과세제도의 기본방향과도 상반
- 또한, 과세형평성의 침해와 함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관련 정책의사결정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과다 면세자 비율의 문제점")

2

종합소득세 과세제도의 분석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구조의 개관

<종합소득세의 세액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종합소득산출세액 (-)세액감면·세액공제 (=)종합소득결정세액

*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40%
1,500-4,500만원	15%
4,500만원-1억원	5%
1억원 초과	2%*

* 2,000만원의 한도액 적용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산출세액	공제율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30%

* 74-50만원의 한도액 적용

○ 2008년부터 시행된 1,200·4,600·8,800만원의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바탕으로 2012년 이후에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표준구간의 단계적 세분화 및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 계속적으로 과세강화

- 2021년부터는 10억원 초과분과 45%를 최고구간·최고세율로 하는 8단계의 누진적 과세체계

<연도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및 기본세율(2008년-2021년)>

과세표준구간	2008년	2009년	2010-2011년	2012-2013년	2014-2016년	2017년	2018-2020년	2021년
1,200만원 이하	8%	6%	6%	6%	6%	6%	6%	6%
1,200-4,600만원	17%	16%	15%	15%	15%	15%	15%	15%
4,600-8,800만원	26%	25%	24%	24%	24%	24%	24%	24%
8,800만원-1.5억원	35%	35%	35%	35%	35%	35%	35%	35%
1.5억원-3억원	⋮	⋮	⋮	35%	38%	38%	38%	38%
3억원-5억원	⋮	⋮	⋮	38%	⋮	38%	40%	40%
5억원-10억원	⋮	⋮	⋮	⋮	⋮	40%	42%	42%
10억원 초과	35%	35%	35%	38%	38%	40%	42%	45%

3

종합소득세 과세제도의 분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의 분석

○ 2007년 이전에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비교적 빈번하게 변경

- 물가상승분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1995년 이전에는 2년 또는 3년의 주기로 매우 빈번하게 과세표준구간을 변경했고, 1996년에 개정된 과세표준구간을 2007년까지 12년간 시행한 후에 2008년부터 사실상 동일한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적용
- 단, 1996-2007년에는 점진적 세율 인하로 과세표준구간에 대해 물가상승이 간접적으로 반영

<종합소득세의 기간별 과세표준구간 및 기본세율(1989년-2007년)>

과세표준구간	1989년-1990년	과세표준구간	1991년-1992년	과세표준구간	1993년-1995년		과세표준구간	1996년-2007년		
					'93년	'94년-'95년		'96-'01	'02-'04	'05-'07
250만원 이하	5%	400만원 이하	5%	400만원 이하	5%	5%	1,000만원 이하	10%	9%	8%
250-500만원	10%	400-1,000만원	16%	400-800만원	10%	9%	1,000-4,000만원	20%	18%	17%
500-800만원	15%	1,000-2,500만원	27%	800-1,600만원	20%	18%	4,000-8,000만원	30%	27%	26%
800-1,200만원	20%	2,500-5,000만원	38%	1,600-3,200만원	30%	27%	8,000만원 초과	40%	36%	35%
1,200-1,700만원	25%	5,000만원 초과	50%	3,200-6,400만원	40%	36%				
1,700-2,300만원	30%			6,400만원 초과	50%	45%				
2,300-5,000만원	40%									
5,000만원 초과	50%									

<기간별 소비자물가 상승율(1989년-2020년)>

기간	물가상승율	기간		물가상승율	기간		물가상승율
1989년-1990년	14.8%	1996년-2007년	1996년-2001년	26.4%	2008년-2020년	2008년-2011년	15.2%
1991년-1992년	16.1%		2002년-2004년	10.2%		2012년-2020년	11.3%(14.3%*)
1993년-1995년	16.4%		2005년-2007년	7.7%		소계	28.2%(31.7%*)
			소계	50.0%	합계(1989년-2020년)		198.3%(206.4%*)

* 2021년8월말까지 반영할 경우의 소비자물가 상승율

4

종합소득세 과세제도의 분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의 분석

○ 물가상승을 반영한 과거의 과세표준구간 개편주기를 고려하면 2012년 이후 사실상 동일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구간·세율체계를 최근의 인플레이션 동향을 반영해서 변경할 필요성

-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명목소득이 매년 증가해서 실질소득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2008년에 비해 2021년에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대부분의 과세표준구간에서 2배 이상 증가해서 납세자의 실질적인 담세력에 비해 조세부담율이 과중하게 높아짐
- 특히, 2021년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상의 일반적인 저소득층 기준인 총급여액 5,500만원 또는 7,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 종합소득세 부담의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서 과세표준 고착화의 문제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저소득계층에 집중적으로 귀착

<실질소득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의 비교(2008년과 2021년의 비교)>

(단위: 천원)

2008년		2012년		증가율
총급여액	결정세액	총급여액	결정세액	
15,000	62	19,753	72	16.0%
30,000	377	39,505	777	106.2%
45,000	990	59,258	2,395	141.9%
60,000	2,079	79,010	4,410	112.1%
80,000	4,830	105,347	12,206	152.7%
100,000	8,685	131,684	17,425	100.6%
200,000	31,807	263,367	62,866	97.7%
400,000	104,426	526,734	164,213	57.3%

5

종합소득세 과세제도의 분석

□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의 분석

○ 근로소득세의 면세자 비율은 명목임금의 지속적 상승을 반영하는 전체적인 감소 추세 중에서도 2014년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의 영향을 반영해서 전년도에 비해 16.8%P 급증

- 2014년의 비율 급증은 저소득층인 1,000-4,500만원의 총급여액 구간에서 가장 현저
- 과세면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자의 1인당 종합소득세 부담 및 1인당 실효세율이 꾸준하게 증가해서 과세대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집중도 심화

<근로소득자의 연도별 및 총급여액 규모별 면세자 비율>

연도	총급여액 규모(억원)											계
	0.1 이하	0.1 -0.15	0.15 -0.2	0.2 -0.3	0.3 -0.4	0.4 -0.45	0.45 -0.5	0.5 -0.6	0.6 -0.8	0.8 -1	1 초과	
2012년	92.1%	38.6%	23.6%	12.5%	5.2%	2.2%	1.2%	0.5%	0.1%	0.02%	0.01%	32.7%
2013년	92.2%	37.6%	22.4%	11.5%	4.6%	1.9%	1.0%	0.4%	0.1%	0.01%	0.01%	31.3%
2014년	99.999%	87.0%	40.6%	36.6%	32.8%	21.1%	14.0%	6.1%	1.2%	0.2%	0.3%	48.1%
2015년	99.998%	86.3%	41.2%	34.5%	30.3%	19.5%	12.8%	5.3%	1.0%	0.2%	0.2%	46.8%
2016년	99.998%	85.6%	39.6%	32.2%	27.4%	18.4%	12.4%	5.4%	1.1%	0.2%	0.2%	43.6%
2017년	99.998%	85.3%	38.6%	32.3%	26.1%	17.4%	11.7%	5.3%	1.1%	0.2%	0.2%	41.0%
2018년	99.997%	85.0%	34.8%	32.9%	27.4%	16.4%	10.8%	4.9%	1.0%	0.2%	0.2%	38.9%
2019년	99.999%	85.6%	34.6%	31.8%	25.4%	14.0%	8.8%	3.9%	0.9%	0.1%	0.2%	36.8%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자의 연도별 1인당 종합소득세 부담(결정세액) 및 실효세율(2012년-2019년)>

연도	1인당 결정세액(천원)	1인당 실효세율	연도	1인당 결정세액(천원)	1인당 실효세율
2012년(①)	1,882	4.69%	2017년	3,272	6.56%
2013년	1,983	4.86%	2018년	3,373	6.71%
2014년	2,932	6.07%	2019년(②)	3,393	6.71%
2015년	3,061	6.24%	①·②의 차이(증가율)	1,511(80.3%)	2.02%P
2016년	3,086	6.30%			

6

종합소득세 과세제도의 분석

□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의 분석

○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고,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은 매우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구간의 개수(8개)도 매우 많은 수준

<OECD 국가들의 근로소득세 면제율>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38.9%	29.3%	17.6%	15.8%	15.1%

* 호주는 2016년 기준, 한국은 2018년 기준, 나머지 국가들은 2017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의 소득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구간 개수>

국가	최고세율	구간 개수	국가	최고세율	구간 개수	국가	최고세율	구간 개수
호주	45%	5	헝가리	15%	1	노르웨이	24.65%	5
오스트리아	55%	7	아이슬란드	31.8%	3	폴란드	32%	2
벨기에	50%	4	아일랜드	40%	2	포르투칼	48%	7
캐나다	33%	5	이스라엘	50%	7	슬로바키아	25%	2
칠레	35%	7	이탈리아	43%	5	슬로베니아	50%	5
콜롬비아	39%	7	일본	45%	7	스페인	22.5%	5
체코	15%	1	대한민국	45%	8	스웨덴	20%	2
덴마트	27.11%	2	리투아니아	32%	2	스위스	13.2%	11
에스토니아	20%	1	라트비아	31.4%	3	터키	40%	5
핀란드	31.25%	5	룩셈부르크	38%	19	영국	45%	3
프랑스	45%	5	멕시코	35%	11	미국	37%	7
독일	45%	3	네덜란드	49.5%	3			
그리스	44%	5	뉴질랜드	33%	4			

*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2020년 기준

7

과세표준구간 고착화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 과세표준 기준금액 변경안

○ 2008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개편(과세표준 기준금액의 1,000만원·4,000만원·8,000만원→1,200만원·4,600만원·8,800만원 변경)은 직전 개편인 1996년 이후의 매우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50.0%)로 인해 이것을 한번에 반영할 경우에는 세수감소가 과중하기 때문에 가급적 저소득층에게 세금부담 감소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지도록(저소득층에 대한 과세표준 기준금액의 증가비율이 더욱 높아지도록) 하는 "하후상박"의 원칙을 적용

- 1,000만원, 4,000만원 및 8,000만원에 각각 20%, 15% 및 10%의 증가율을 적용
- 2007년 이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개편은 이러한 "하후상박"의 원칙과는 비교적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과세표준 기준금액 증가비율에 대한 특별한 원칙을 발견하기 어려움

○ 따라서, 과세표준 기준금액 변경안은 2008년 이후의 소비자물가 상승율을 반영해서 2022년부터 동 기준금액을 변경할 경우에 평균세율이 현행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체계가 적용되기 시작한 2008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마련

<과세표준 기준금액 변경안>

적용세율		과세표준 기준금액		
기준금액 이하	기준금액 초과	현행	변경안	증가율
6%	15%	1,200만원	1,200만원	0%
15%	24%	4,600만원	5,100만원	10.9%
24%	35%	8,800만원	1억1,000만원	25.0%
35%	38%	1억5,000만원	2억원	33.3%

8

과세표준구간 고착화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 과세표준 기준금액 변경안

○ 그러나, 변경안의 "상후하박"의 형태로 인해 정책적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분석과 무관하게 "하후상박" 형태의 2008년 개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과세표준 기준금액 수정변경안")

<과세표준 기준금액 수정변경안>

적용세율		과세표준 기준금액		
기준금액 이하	기준금액 초과	현행	변경안	증가율
6%	15%	1,200만원	1,600만원*A	33.3%
15%	24%	4,600만원	5,800만원	26.1%
24%	35%	8,800만원	1억원	13.6%
35%	38%	1억5,000만원	1억7,000만원*B	13.3%

*A 2008년부터 2021년 8월말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율(31.7%)을 반영(1,200만원×(1+31.7%)≒1,600만원)
*B 가장 낮은 기준금액 증가율의 절반 수준(33.3%×50%=16.7%)을 반영(1억5,000만원×(1+16.7%)≒1억7,000만원)

9

과세표준구간 고착화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 물가연동제 도입안

○ 소득세의 물가연동세제를 시행하는 일부 OECD 국가들 중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실질세후소득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의 과세표준구간 및 인적공제 등을 실질세후소득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물가에 연동해서 원칙적으로 매년 조정

- 미국 재무부는 Revenue Procedure를 통해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생계비지수(cost of living index)를 기준으로 매년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조정하고, 각종 공제의 기준금액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서 매년 조정
- 생계비지수의 계산을 위한 IRC의 계산식에서 CPI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지만 기준연도(2016년)와 비교한 연동도시소비자물가지수(C-CPI-U)의 누적증가율을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반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CPI를 이용해서 동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캐나다와 스위스도 미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물가연동을 통해 세금부담을 조정

<소득세 관련 물가연동제 해외사례>

구분			국가
완전한 물가연동(과세표준의 디플레이트)	매년 실시		캐나다, 스위스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실시(이하 "일정기준 실시")		룩셈부르크(첫 6개월의 CPI가 5% 초과시), 브라질(당해연도 5%3년간 15%)
불완전한 물가연동(부분적 물가연동)	과세표준구간 확장	매년 실시	미국
		일정기준 실시	프랑스(5% 초과시)
	공제 적용구간 확장	매년 실시	우루과이
		일정기준 실시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 관련지수들을 물가연동의 기준으로 적용			네덜란드(인플레이션 관련지수), 이스라엘(cost of living index), 덴마크(CPI·최저임금을 바탕으로 매년 의회의 결정)

10

과세표준구간 고착화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 물가연동제 도입안

○ 2021년부터 시행하는 물가연동제 도입안은 미국의 개인소득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2전년도 4분기부터 직전년도 3분기까지의(2019년 4분기-2020년 3분기의) 1년간의 기간에 대해 측정한 직전연도인 2020년의 물가상승율을 반영해서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조정("인플레이션 반영안")

<인플레이션 반영안>

적용세율		과세표준 기준금액		
기준금액 이하	기준금액 초과	현행	변경안	증가율
6%	15%	1,200만원	1,210만원*	0.83%
15%	24%	4,600만원	4,630만원	0.65%
24%	35%	8,800만원	8,860만원	0.68%
35%	38%	1억5,000만원	1억5,090만원	0.60%
38%	40%	3억원	3억190만원	0.63%
40%	42%	5억원	5억310만원	0.62%
42%	45%	10억원	10억630만원	0.63%

* 1,200만원×(1+0.63%)≒1,210만원

○ 인플레이션 반영안의 과세표준 기준금액의 조정 수준과 종합소득세 부담의 감소 효과는 소비자물가상승율의 반영기간의 차이 때문에 과세표준 기준금액 변경안에 비해 매우 제한적

- 따라서, 2021년의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과세표준 기준금액 변경안에 의해 대규모로 조정한 후에 2022년 이후에는 2021년을 기준연도로 인플레이션 반영안을 통해 매년 동 기준금액을 소규모로 계속해서 조정하는 것이 과세표준구간 고착화의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 개편방안

11

과다 면세자 비율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 공제 축소방안

○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서 사업소득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

- 그러나, 시행취지와 별도로 지나치게 확대된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서 국민개세주의의 원칙을 실현하고, 납세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해서 소득세율의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개편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와 관련해서는 종합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기준

<종합소득자의 연도별 및 종합소득 규모별 면세자 비율>

연도	종합소득 규모(억원)								계
	0.1 이하	0.1-0.2	0.2-0.4	0.4-0.5	0.5-0.6	0.6-0.8	0.8-1	1 초과	
2016년	22.0%	10.0%	2.6%	0.3%	0.2%	0.2%	0.3%	0.7%	12.6%
2017년	20.9%	9.2%	2.6%	0.4%	0.2%	0.2%	0.4%	0.8%	11.7%
2018년	20.9%	8.6%	2.6%	0.4%	0.3%	0.3%	0.4%	0.9%	11.6%
2019년	20.7%	7.3%	2.3%	0.4%	0.3%	0.3%	0.4%	0.9%	11.0%

○ 종합소득자의 면세자 비율도 명목소득의 지속적 상승을 반영해서 전체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냈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의 비율의 3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서 근로소득자의 상대적으로 과도한 면세자 비율의 문제점을 다시 확인

- 과세대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집중도 심화의 문제도 종합소득자에게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12

과다 면세자 비율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 공제 축소방안

○ 현실적인 공제 축소방안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축소·폐지하는 것인데, 이들 공제를 개편할 경우에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해서는 안종석과 오종현(2018)의 분석결과 및 일반적인 경제학적 가정을 바탕으로 계산

-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현행 소득세법에 비해 64% 감소시켜서 720만원(2,000만원×(1-64%))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폐지와 결합해서 종합소득자와 동일한 수준의 면세자 비율에 해당
- 단, 공제 축소방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불충분한 종합소득자의 세원양성화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근로소득자의 상대적인 과세상 불이익이 더욱 커질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실제 시행상의 어려움이 커지는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음
- 이러한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면 종합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이 근로소득자의 30% 정도의 수준인 것을 고려해서 근로소득자의 동 비율을 70% 인하해서 종합소득자의 수준에 맞추는(1-70%=30%) 대신 40% 인하해서 종합소득자의 2배의 수준에 맞추는(1-40%=30%×2=60%) 보다 현실적인 개편방안("수정 공제 축소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공제 축소방안>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70%
500만원-1,425만원	40%*

* 720만원의 공제한도 적용

<수정 공제 축소방안>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70%
500만원-1,500만원	40%
1,500만원-2,500만원	15%*

* 900만원의 공제한도 적용

13

과다 면세자 비율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 최저세액 부과방안

○ 제20대 국회에서 유사한 내용의 개편방안("부과방안 참고개정안")이 논의

- 총급여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최소한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국민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
- 부과방안 참고개정안에 대한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긍정적 검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① 세부담 조정을 위하여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경우 특정 정책목표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감소시키고 과세체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고 ② 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근로소득자의 주요 지출항목에 대한 비용 부담 경감이라는 고유의 조세정책적 목표가 있고, 국회 및 정부도 이들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세제를 개편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③ 이들 세액공제는 각 공제항목별로 개별한도가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특별세액공제 한도를 추가적으로 설정하게 되면 해당 공제혜택이 중복적으로 제한될 소지가 있다는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
- 따라서, 최저세액 부과방안에서는 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별도로 구분해서 고려하지 않음

○ 부과방안 참고개정안과 같이 연간 12만원(매월 1만원)의 최저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세재의 단순화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최저세액 부과방안은 근로소득자에게 특정 공제·감면 항목 등과 무관하게 12만원의 최저세액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규정

- 단,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12만원의 최저세액으로는 과다 면세자 비율의 문제점을 충분히 개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간 12만원 대신 24만원, 36만원 및 60만원의 최저세액을 부과하는 추가적 개편방안("수정 최저세액 부과방안①·②·③")도 추가적으로 검토

14

과다 면세자 비율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 최저세액 부과방안

○ 결정세액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학적 가정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최저세액 부과방안 등을 통해서는 소득세의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정책적 의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지만, 실제 시행을 통한 효과는 비교적 제한적을 것을 확인

- 단, 과다 면세자 비율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효과는 2014년의 세액공제 전환 등의 영향으로 인해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이 가장 급증했던 저소득층인 1,000-4,500만원의 총급여액 구간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서,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관련한 상당한 교정효과는 기대

<최저세액 부과방안 및 수정 최저세액 부과방안의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 규모별 예상 면세자 비율(2019년)>

총급여액	현행	최저세액 부과방안	수정 최저세액 부과방안①	수정 최저세액 부과방안②	수정 최저세액 부과방안③
		12만원	24만원	36만원	60만원
0.1억원 이하	99.999%	99.998%	99.998%	99.996%	99.993%
0.1억원-0.15억원	85.6%	84.2%	82.7%	81.3%	78.2%
0.15억원-0.2억원	34.6%	33.2%	31.8%	30.5%	28.0%
0.2억원-0.3억원	31.8%	30.5%	29.2%	28.0%	25.7%
0.3억원-0.4억원	25.4%	20.3%	15.9%	12.2%	6.7%
0.4억원-0.45억원	14.0%	11.3%	9.0%	7.0%	4.1%
0.45억원-0.5억원	8.8%	7.1%	5.6%	4.4%	2.6%
0.5억원-0.6억원	3.9%	3.1%	2.5%	1.9%	1.2%
0.6억원-0.8억원	0.9%	0.7%	0.6%	0.5%	0.3%
0.8억원-1억원	0.1%	0.1%	0.1%	0.1%	0.1%
1억원 초과	0.2%	0.2%	0.2%	0.1%	0.1%
계	36.8%	35.3%	34.0%	32.8%	30.8%

15

감사합니다.

16

발제 3

비상경제 하의 소득보전 대책

송 두 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비상경제 하의 소득보전 대책

(2022. 07)

민주연구원 송두한 부원장

목 차

I. 금리 환경 1

II. 세제 환경 8

III. 소득보전 대책 12

I. 금리 환경

금리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 전환 → 글로벌 유동성 축소 구간 진입

-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전환(저금리→고금리)
  - ✓ 2008년 이후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환경 지속
    - ▶연준 자산): ('07년)0.9조$) → ('19년)4.2조$ → ('22년)8.9조$
  - ✓ 2021년 이후 고금리주기 전환 → 금리상승 국면 장기간 지속
    - ▶(미국) 급격한 금리인상을 통한 물가 대응: ('21년 말) 0.25% → ('22년 현재) 1.75%
    - ▶(한국) 2021년 8월 선제적 금리인상 단행: ('21년 8월) 0.50% → ('22년 현재) 1.75%

한·미 금리정책 특성 변화

자료: 한국은행, FRB, Bloomberg

- 1 -

I. 금리 환경

물가

- 복합적 물가대란 사태
  - 소비자물가는 1997년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 갱신
    - CPI 추이: ('21.1)0.9% → '22[(1월)3.6% → (6월)6.0%]
  - 통화팽창에 다른 물가상승(수요 견인)
    - 통화량: ('10년)1,661조원 → ('22.4)3,674조원
  - 공급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
    - 유가 등 원자재 수입물가 상승이 상승 압력 가중

통화량·통화승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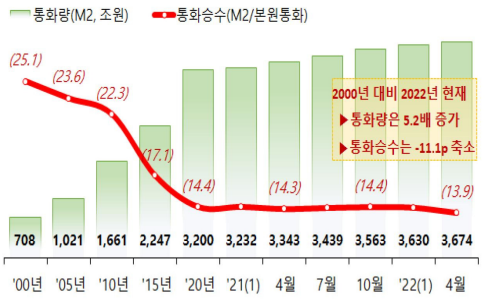

한·미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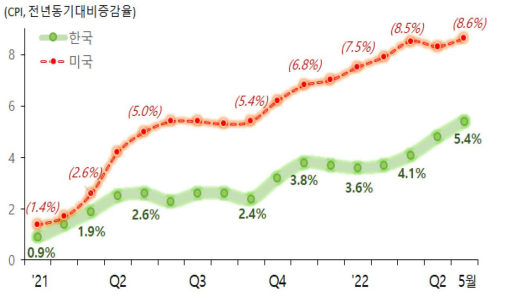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FRB, Bloomberg

- 2 -

I. 금리 환경

시장금리

- 시장금리 급등 추세(Rapid · Steep · Prior)
  - 장기간에 걸친 하강사이클 종료
  - 유례없는 "U형" 급등 패턴
    - 국채(3Y) 평균: ('00년대)5.2 → ('10년대)2.5 → ('20년대)1.5%
      ▶ 최근 추이: ('21.6)0.5% → '22[(1월)1.4% → (6월)3.5%]

한·미 국채수익률(3Y)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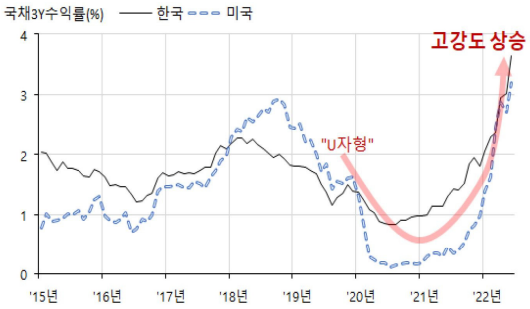

금리 장기시계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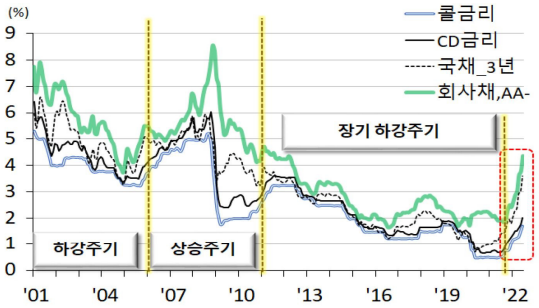

- 3 -

I. 금리 환경

대출금리

- 대출금리 폭등으로 가계 이자부담 증가
  - 시중은행 신용대출금리는 2021년 하반기부터 급등세로 전환
    - 신용대출금리: ('21.05)3.5% → ('22.05)5.0%
  - 금리구성: 가산금리(유지), 지표금리(급등), 우대금리(하락)
    - 신용대출 지표금리: ('21.05)0.7% → ('22.05)2.0%

시중은행 대출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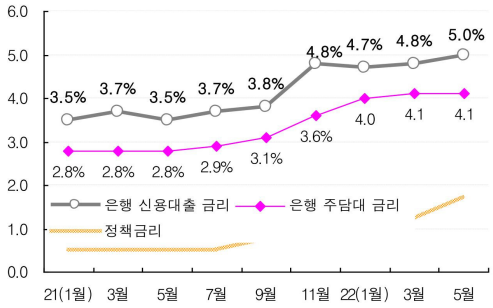

시중은행 대출금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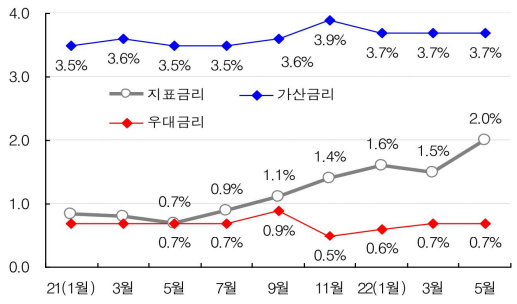

- 4 -

I. 금리 환경

가계부채

- 가계부채 양적 팽창, 질적 저하
  -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빠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
    - 가계부채(GDP대비): ('08년) 63% → ('21년) 96%→ ('22.03)90%
  - 가계 디레버리징(자산가격 하락을 수반하는 채무조정 과정) 리스크에 노출
    - 가계부채(GDP대비): ('08년) 63% → ('21년) 96%→ ('22.03)90%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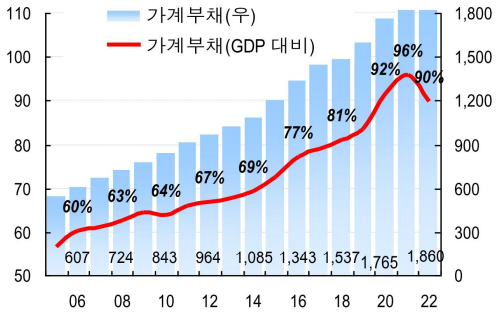

(미국)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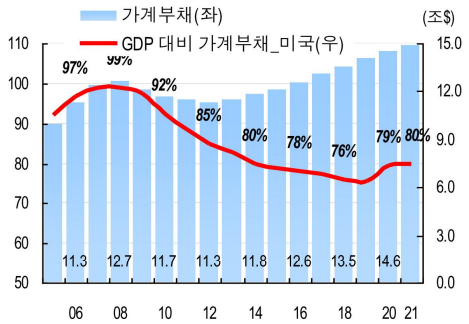

- 5 -

I. 금리 환경

코로나부채

- 코로나 국면에서 가계대출 및 자영업자대출 급증
  - 코로나대출 증가
    - 가계대출(248조원 증가): ('19년) 1,505조원 → ('22.03)1,753조원
    - 자영업자대출(276조원 증가): ('19년) 685조원 → ('22.03)961조원
- 금리 1% 상승시, 가계 이자부담
  - (가계대출) 금리 1% 상승에 따른 연간 이자부담은 약 14조원
    - 추가 이자부담(14조원): 변동금리부 가계대출(1,402조원) * 1%
  - (자영업자대출) 금리 1% 상승에 따른 연간 이자부담은 약 7.7조원
    - 추가 이자부담(7.7조원): 변동금리부 자영업자대출(769조원) * 1%
- 자영업자대출은 4차례에 걸친 이자유예/만기연장 조치로 잠재부실 증가
  - (자영업자) 부채 건전성 악화로 부채상환 여력 소진
  - (금융기관) 펜데믹 폭리로 사상 최대 실적 기록
    - 작년 5대 금융지주 이자이익은 40조원을 돌파

- 6 -

I. 금리 환경

글로벌 자산버블

- 글로벌 자산시장 버블붕괴 위험 직면 → 자산소득 감소, 부채부담 가중
  - 버블경제: 확장에서 소멸로 국면 전환
    - 가상화폐: 버블붕괴 경험
    - 자본시장: 증시(조정과 붕괴 사이), 채권(가격폭락 진행)
    - 원자재/부동산: 금리주기 정점에서 가격충격 발현 가능성 ▶

▶ 부채로 쏘아올린 버블이 꺼지면 가계부채 부실로 전이

Minsky Moment 궤적 대비 주택경기 국면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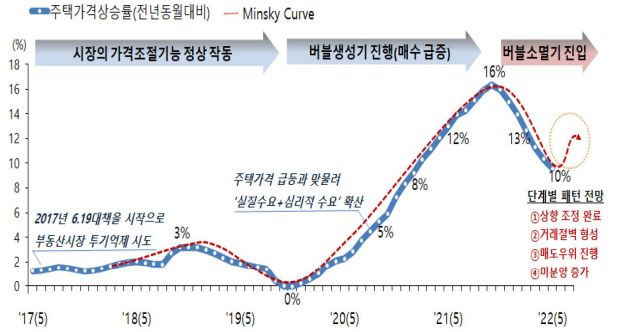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한국부동산원

소득분위별 대출 중 주택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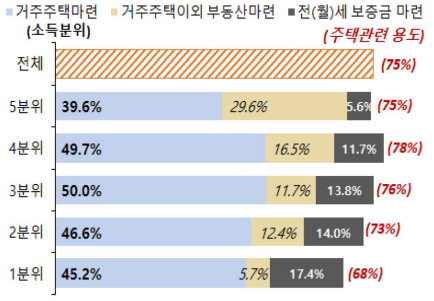

I. 금리 환경

자산버블_부동산

- 미국 주택시장: 2013년 대비 108% 상승 →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 (연준) 급격한 금리인상을 통한 부동산경기 과열 진화
    - 금리정책: ▶ 빅스텝(0.5%↑) ▶ 자이언트 스텝(0.75%↑ ▶ 울트라 스텝 우려(1.0%↑)
- 국내 주택시장: 2013년 대비 61% 상승 → **2022**년 들어 경기하강 사이클 진입

한국 아파트 실거래가 및 미국 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 장기 추이(2013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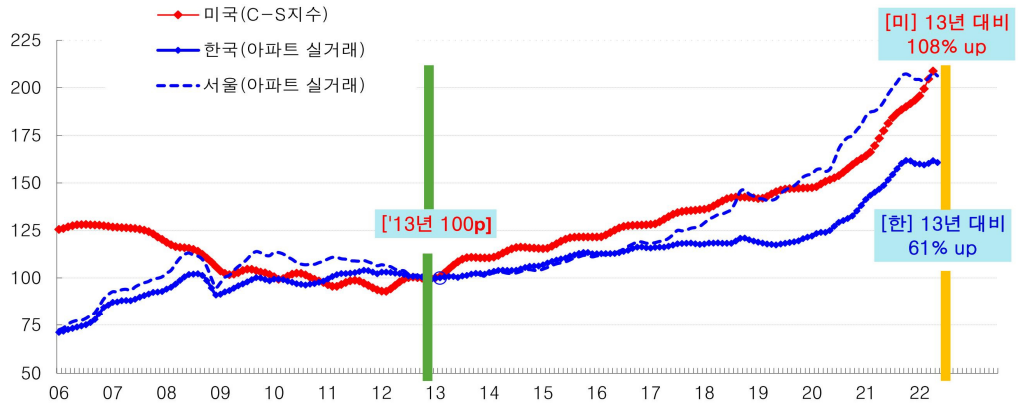

I. 금리 환경

자산버블_증시

- 미국 증시: 2021년 이후 버블소멸 주기 진입
  - NASDAQ: 합리적 버블(~18년) ▶ 투기적 버블(19년~21년) ▶ 버블조정 또는 붕괴(21년 이후)
    - 나스닥지수는 2009년 금융위기 저점 대비 "802% 상승
- 한국 증시: 글로벌 증시 버블붕괴시, 외국인자본이탈 충격(환율 급등/증시 급락)에 노출
  - 코스닥지수는 이미 금융위기 직전 수준으로 회귀

KOSDAQ 및 NASDAQ 장기 추이(2007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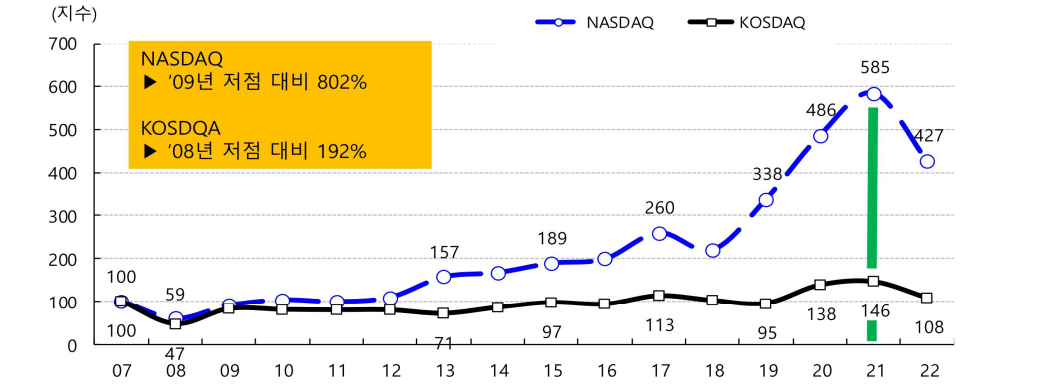

I. 금리 환경

자산버블_원자재

- 공급충격(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 원자재 가격버블은 2008년 위기 직전과 비슷한 수준
    - 2008년 가격버블(글로벌 원자재수요 증가) ▶ 2022년(원자재공급 충격)
- 금리인상을 통한 물가대응 → 원자재 버블붕괴 가능성 점증

WTI 오일 및 옥수수가격 장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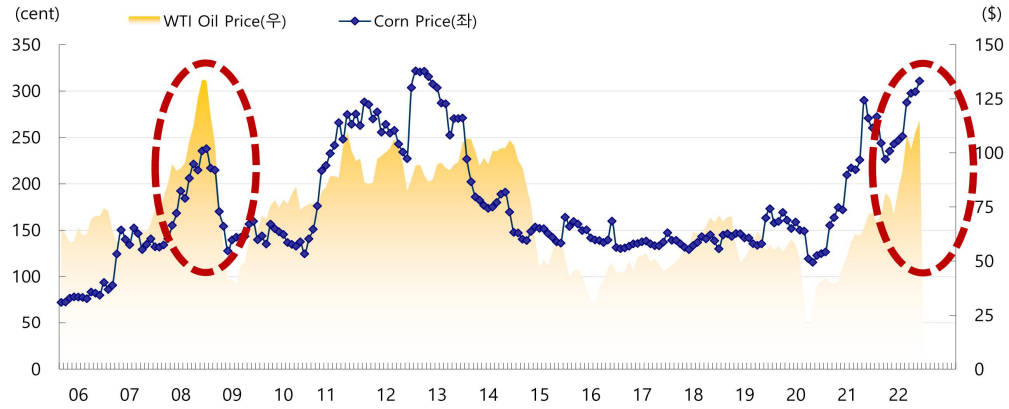

II. 세제 환경

소득세 증세

- 2008년 소득세 개정 이후 소득세 중심의 증세구조 고착화
  - 10년 누적 소득세 증가율(260%) ▶ '09년(34조원) → '21년(114조원)
  - 10년 누적 법인세 증가율(99%) ▶ '09년(35조원) → '21년(70조원)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수 비중은 가파르게 증가
  - 소득세 비중(국세 대비): (09년) 21% → ('22년) 33%
  - 법인세 비중(국세 대비): (09년) 21% → ('22년) 21%

2008년 이후 소득세 증세 추이

(조원, %)	09	11	13	15	17	19	21
국세	165	192	202	218	265	294	344
소득세	34.4	42.3	47.8	60.7	75.1	83.6	114.1
법인세	35.3	44.9	43.9	45	59.2	72.2	70.4
소득세 비중 (국세대비)	20.9	22.0	23.7	27.9	28.3	28.5	33.2
소득세/법인세 배율	1.0	0.9	1.1	1.3	1.3	1.2	1.6

- 11 -

II. 세제 환경

소득세 증세

- 2019년 이후 소득세증가율은 상승, 법인세 증가율은 하락
  - 소득세증가율('19-'21): 36%
  - 법인세증가율('19년~'21년): -2%

- 소득세는 세율상향 없이도 보편 증세가 이루어지는 구조
  - 소득세 증분('09년 대비): '13년(13조원) → 17년(41조원) → 19년(49조) → 21년(80조원)

소득세 장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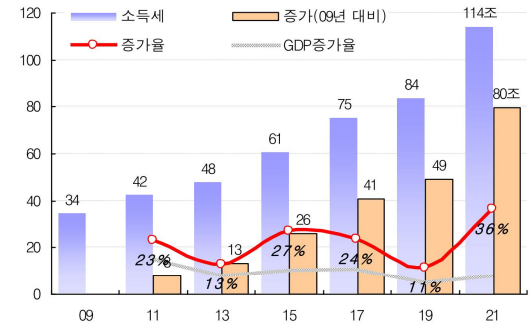

법인세 장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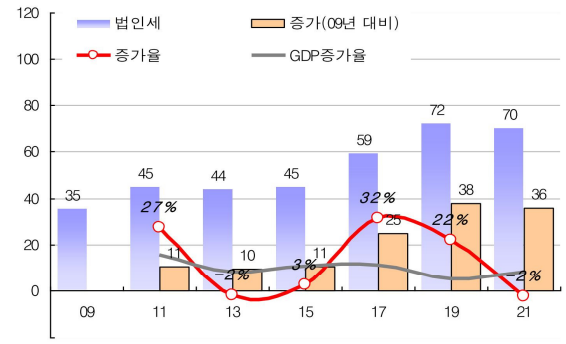

- 12 -

II. 세제 환경

소득세 증세

- 소득세율 구간의 화석화가 보편 증세 원인으로 작용
  - 고소득층 세율구간이 신설되었지만 "8,800만원 이하 세율구간"은 15년간 그대로 유지
    - 지난 15년간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세율구간
    - 소득세 자연 증세: 실질 소득이 그대로인데 차상위 세율 적용

2009년 세율구간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6%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초과	35%

2012년 세율구간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3억 이하	35%
3억 초과	38%

2021년 세율구간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 이하	35%
3억 이하	38%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

- 13 -

II. 세제 환경

소득세 증세

- 처분가능소득 감소 ▶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가 임금상승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
  - 누적 임금상승률(16년~21년): 18%
    - 월 평균 근로자임금: 2016년(311만원) → 2021년(365만원)
  -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상승률(16년~21년): 39%
    -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2016년(36만원) → 2021년(51만원)
- 저소득층의 소비여력 소진
  - 2022년 1분기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비중(소득대비)
    - 소득 1분위(평균 소득 1,043만원) ▶ 소득대비 지출비중(111%) * 적자 가구
    - 소득 2분위(평균 소득 2,541만원) ▶ 소득대비 지출비중(71%)
    - 소득 3분위(평균 소득 3,952만원) ▶ 소득대비 지출비중(59%)
    - 소득 4분위(평균 소득 5,750만원) ▶ 소득대비 지출비중(53%)
    - 소득 5분위(평균 소득 10,833만원) ▶ 소득대비 지출비중(40%)

- 14 -

III. 소득보전 대책

1. 물가연동형 소득세법 개정

- 세율구간 정상화
  - ✓ 화석화된 세율구간이 매년 물가를 반영해 상향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 추진
    - ▶ 물가반영 세율구간
      : 기존 세율구간 * (1+연간 물가상승률)

➡ ✓ 보편 증세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 차단
- ▶ 가처분소득: 명목소득 증가로 세율이 올라가는 부작용 방지
- ▶ 내수활성화: "소득감소-소비위축-내수업종 매출충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 차단

2022년 5월 기준 세목별 세수 증가 추이

(조원)	21년 실적	22년 추경	21년(~5월)	22년(~5월)	증감
소득세	114.1	127.8	51.6	60.7	9.1
법인세	70.4	104.1	37.9	60	23
상속증여세	15	15.9	7.2	7.6	0.4
증권거래세	10.3	7.5	4.8	3.2	-1.7
부가세	71.2	79.3	33.6	37.3	3.7
개소세	9.4	10.1	3.9	4	0.1
부가세	71.2	79.3	33.6	37.3	3.7
종부세	6.1	8.6	0.2	0.4	0.2

초과세수 및 세수오차율(본예산대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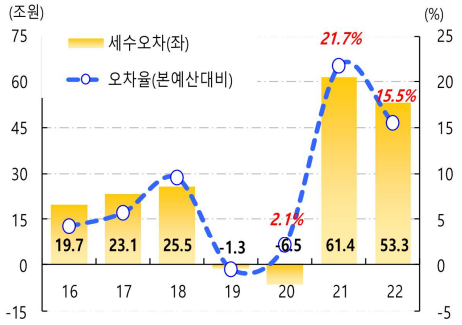

III. 소득보전 대책

2. 자영업자대출 이자감면 프로그램 가동

- 코로나대출에 대한 이자감면 방안 마련
  - ✓ (금융기관) 코로나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단행
  - ✓ (정부) 이자감면액의 50%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매칭 지원
    - ▶ 코로나대출 276조원에 대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각각 1% 이자 부담
    - ▶ 소요예산(총 5.6조원): 금융기관(2.8조원) + 정부(2.8조원)

➡ ✓ 자영업자대출(961조원) 연착륙 유도
- ▶ 4차례에 걸친 이자유예/만기연장 조치로 인한 잠재부실 흡수
- ▶ 자영업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기관 여신부실화 차단

<참고> 정부의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

- 정부의 금융대책은 금융기관을 위한 "부채관리대책"
  - ✓ 연체에 진입한 부실대출 정리 지원 → 부실채권에 대한 "선별적, 사후적 관리" 지원
    - • 새출발기금 설립(자영업자): 30조원의 부실채권 매입 ▶ **사후적 부실채권 관리**
    - • 대환대출(자영업자): 8.7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대환대출 지원 ▶ **극소수 대상 선별 지원**
    - • 청년특례 채무조정 신설(저신용 청년 30~50% 이자감면):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일환 ▶ **기존대책 연장선**
    - • 인심전환대출(고금리 주담대 저금리전환): 40조원 공급 ▶ **보다 근본적인 주택금융 대책 마련**

☞ 지금은 정상채권 부실화(잠재부실) 방지대책 필요 → 금리충격에 대한 보편적 이자감면 프로그램 가동

III. 소득보전 대책

3. 소비증진형 물가지원금

- 민생물가대란으로 인한 소득 감소 방어
  - ✓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감소분을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
    - ▶ 연 물가상승률 5%를 적용하고, 가구 지출에 따라 차등 지급
    - ▶ 소득1분위(평균 소비지출의 5%)
    - ▶ 소득2분위(평균 소비지출의 4%)
    - ▶ 소득3분위(평균 소비지출의 3%)
    - ▶ 소득4분위(평균 소비지출의 2%)

➡

- ✓ 카드사용시 10% 할인을 적용해 소비 여력 10배로 확대
  - ▶ 물가대란으로 인한 저소득층 소비충격 완화
  - ▶ 물가발 소비위축 적극 방어: 물가폭등-소비위축-매출충격
  - ▶ 총 소요예산: 4.3조원

가구 소득분위	(A)월평균 소비지출 ['21.2/4~'22.1/4평균]	(B)소비가중치× 포인트 적립률	물가지원금 [(A)×(B)×6개월]	소요예산 (조원)	소비증진 (10배)
1분위	117만원	100% × 5%	35만원	1.4조원	350만원
2분위	174만원	80% × 4%	33만원	1.3조원	330만원
3분위	231만원	60% × 3%	25만원	1.0조원	250만원
4분위	304만원	40% × 2%	15만원	0.6조원	150만원

- 17 -

토론 1

민생물가 대책 및 소득보전 방안

이 용 우 국회의원

민생물가 대책 및 소득보전 방안

이 용 우 국회의원

토론 2

민생물가 대책 및 소득보전 방안

박 기 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민생물가 대책 및 소득보전 방안

박 기 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3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

임 영 주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실장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

임 영 주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실장

중소기업의 四重苦(高) - 고물가, 고환율, 고임금, 고금리
◈ 코로나19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은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임금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 특히, **'물가(원자재 가격) 상승 → 생산비용 증가 → 영업이익 감소 → 투자여력 저하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우려**

1. 高물가(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 **(中企현실) 생산비용 상승에도 불구, 납품단가 반영 한계**

- 중소기업의 **35.9%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수급기업이며, 매출 의존도가 74.6%**에 달하는 등 **교섭력이 악한 상황**
- 이와 관련 최근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지만, 중소기업은 거래단절 우려로 **납품단가 인상 요구 한계 → 수익성 악화** 등 애로 가중

중앙회 조사결과 ('22.6월)	'20년 대비 '21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7.0%에서 4.7%로 감소했다고 응답

○ **(정책제언)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한 도입**

2. 高금리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 심화

○ (中企현실) **빚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온 중소기업은, 최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비용 부담 심화되는** 상황

-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 규모* 확대**

  * '20.7월(776조원) → '21.7월(858조원) → '22.7월(931조원)

  - 지난 13일, 사상 첫 **3연속 기준금리 인상**이자 **0.5%p 인상**

○ **(정책제언) [은행] 中企에 과도하게 불리한 대출조건 적용 자제, [정부]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 이자감면 등 대책 마련 등**

3. 高환율 및 물류난으로 인한 피해 심화

○ (中企현실) 환율변동 및 선복·컨테이너 부족 등 물류 애로 심화

- 수출입 **중소기업 61.2%**가 운임 상승, 선적지연, 선복·컨테이너 부족 등으로 인한 **물류난** 호소
- **최근 급등하는 환율**로 인해 **이익을 보는 수출기업(19.1%)** 보다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30.5%)이 많음**

중앙회 조사결과 ('22.6월)	2022년 중소기업 수출 전망이 작년('21.11) 대비 올해('22.6) 조사에서 "나쁘다"는 응답은 5.2%에서 25.6%로 20.4%p 증가한 반면 "좋다"는 응답은 40.4%에서 21.1%로 19.3%p감소

○ (정책제언) 환율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물류 관련 운임지원 확대, 선복 및 컨테이너 확보 지원 등

4. 高임금으로 인한 경영부담 가중

○ (中企현실) 물가·금리인상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中企·소상공인은 지불능력 미고려한 최저임금 인상 감내할 여력 부족

- 지난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41.6%)에 더해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 결정**으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심화**
- 특히, 지불능력을 초과하여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다보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321만명**에 달하는 현실

○ (정책제언)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선 및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토론 4

경제위기 소상공인 소득 보전 대책

이 성 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경제위기 소상공인 소득 보전 대책

이 성 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1. 새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대책

[1] 채무 조정

❍ 3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부실 채권 매입

❍ 매입한 부실 채권은 최대 1~3년 거치에 최대 10~20년 장기·분할상환에 대출금리 인하

❍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의 60~90% 감면

→ 지원 규모 30조 원 중 정부(캠코) 예산은 3.6조 원이 소요되고 이는 전체 기금의 12%에 해당. 그 외 자금은 금융권들의 출자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 금융사들의 고통 분담의 취지로 보이나, 기금 운영과정이 채권자인 은행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 우려. 과거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소액 취약채무자의 채권조차 제대로 탕감하지 않는 등 상환 실적을 쌓은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국민추심기금'이라는 비판.

[2] 저금리 대환 대출

❍ 소상공인의 대출 중 7% 이상 고금리 대출 8조 7,000억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3] 사업자금 지원

❍ 소상공인들에게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 42조 2,000억 원을 지원

[4] 주거래금융기관 책임 관리제 추진

❍ 9월 말 기존의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가 이루어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위험을 차주와 금융권, 정부가 분담

2. 일자리안정자금 재지급

[1] 일자리안정자금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1월 정부가 추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지난 6월 종료

❍ 올해 기준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지원하고,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취약계층 종사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2] 최저임금 부담과 인력난의 이중고

❍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하락과 더불어 플랫폼 수수료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 이어 3고 현상(물가/환율/금리)으로 인해 매출 및 소득 하락

❍ 외국인 근로자 부족과 베달 플랫폼으로의 일자리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한 인력난 심각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과 무급 가족 종사원 급증

3. 소비 활성화 촉진

❍ 민생물가 대란으로 인한 소득 감소 방어를 위한 소비증진형 물가지원금 필요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물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가구당 최대 135만 원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수당 도입. 이후 미국 전역에 걸쳐 인플레이션 수당 지원 증가 추세.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지급 방식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

❍ 추경을 통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확대

→ 2022년도 예상안 편성 당시 연간 6조 원의 발행을 전제로 관련 예산 2,403억 원 배정했으나 당시 여당이 강력히 증액을 요구하면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30조 원으로 늘어났지만 정부 예산은 6,035억 원으로만 증액. 지역화폐 발행량 대비 지원예산의 축소로 하반기 지역화폐 발행 축소·중단 속출

4. 사회적 고통 분담 확대

❍ 가맹점 / 대리점 / 하도급 /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에 대한 본사의 고통 분담 필요

→ 물가 연동형 수수료 및 납품단가 도입 등을 통한 가맹·대리점비, 플랫폼 이용 수수료 등의 완화

❍ 상가 임대차 대책 필요

→ 윤석열 대통령 임대료 나눔제 공약

→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 임대료 멈춤법 발의

→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임대인/임차인/국가가 임대료 분담

→ 차임감액 청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 통신비 인하

→ 코로나19 기간 특수를 누린 통신사들의 소상공인 통신비 인하

❍ 카드수수료 및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 코로나19 기간 특수를 누린 카드사, 간편 결제사들의 수수료 인하

5. 기타 비용 절감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 손실보전 사각지대 해소

❍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 개편

❍ 코로나19 소상공인 생활지원비 확대 (사업주 확진 및 확진자 방문 시)

❍ 상병 수당제도 시범사업 소상공인으로 확대

❍ 소상공인 전기요금 / 가스 요금 인하 및 지원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및 고용보험 활용

→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보험을 실업 구제 방식에서 실업 방지 대책으로 전환하여 소득 보존을 통한 폐업 방지

❍ 소상공인 자녀 교육비 지원 바우처 등 확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